2025년도 충남학사관(대전) 2학기 충원선발 확정자 입사등록 안내

1

충원선발 확정자 입사등록

- 등록기간: 2025. 7. 29.(화) 18:00 ~ 8. 4.(월) 16:00까지
- O 등록절차

학사관 누리집

hs.clehrd.or.kr

등록신청(온라인)

- ▶대전학사관-입사안내-입사 등록·취소·과오납반환
- ▶제출 서류 첨부
- · 공통제출서류
- · 추가제출서류(해당자)

부담금납부

지정계좌로 부담금 납부(유형별 상이)

 \Box

- 홈페이지 입사등록
 - ① 공통 제출서류: 흥부 X-Ray 건강진단결과서 (소견서, 건강진단서 등)

▶ 2025. 7. 1. 이후 검사 결과

- ※ 진단일 기준으로 하여 7. 1.이후 촬영한 검사 결과 발급본 발급일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 시 확인
- ▶ 병·의원 의사의 정상판정 표기 된 서류 첨부(건강진단서, 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, 소견서 등
- ※ 영상의학과에서 발급하는 판독서는 제출 불가

 \Box

- ▶ 정상판정 표기가 없는 제출서류는 판단이 어려움으로 이상여부, 정상 등 표기되어야 함
- ▶ 진단 후 검사결과 또는 서류 발급이 늦어질 수 있는 보건소, 대형병원에서의 검사는 추천하지 않음 (검사 전 등록 기한 확인 후 주변 내과, 건강검진 전문기관 등 이용 권고)
- ▶ 기한 내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등록포기로 간주함

- 2 입사신청 시 휴학생 추가 제출서류: 재학증명서
 - ▶ 학교 사정에 의해 등록기한 이후(8월 중순)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휴학생(복학예정자)은 입사등록 시 사유서 첨부(별도양식 없음)후 아래의 이메일로 8. 4.
 (월)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2학기 입실일 전까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실할 수 없음 ※ 제출 이메일 주소: gykim67@clehrd.or.kr
- O 부담금(기숙사비) 납부
 - 지정계좌: (농협은행) 301-0365-3567-21 「(제)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대전학사관」
 - ❷ 납부금액: 923,330원(구십이만삼천삼백삼십원)
 - 부담금 853,330원(8. 24.~8.31, 53,330원+9.1.~12.31.(200,000원×4개월)) + 입사비 60,000원
 - + 출입카드비 10,000원 ※8 · 9월은 1개월로 적용
 - ▶ 부담금 납부 시 사생 본인 이름 으로 입금※ 동명이인이 많으니 휴대전화 뒤 네자리 표기 (예) 학사관6000
 - ▶ 타인 이름으로 입금 시 학사관으로 연락
 - ▶ 2025년 1학기 재사생으로 미신청해 다시 신청한 학생은 계속재사생이 아닌 '신규입사생'으로 입사비, 출입카드발급비 모두 납부해야 함
 - ▶ 기한 내 부담금 미납부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함

2 기타 안내

- 입사준비물 및 세부 안내: 입사 등록 확정 후 확정자 대상 안내문 공지
- 입사일(개원일): 2025. 8. 24.(일) 11:00부터(석식부터 제공)
- 2025년도 2학기 운영기간: 2025. 8. 24.(일) 11:00 ~ 12. 31.(수) 14:00
- 룸메이트 사전 신청: 입사 등록 확정 후 대상자 안내문 공지
- 문의: 042-337-6000(대표)/ 042-337-6007(담당자) ※평일 09:00~18:00

3 환불규정

구 분	대 상	적 용 기 간	환 불 액	비고
등록 추 취 소	계속재사생, 신입사생 (공통적용)	입사등록 기간 내 취소 「7. 29.(화) 18:00 ~ 8. 4.(월) 16:00까지」	납부액의 90% 환불	
		입사등록기간 이후 7일까지 「8. 4.(월) 16:00 ~ 8. 11.(월) 16:00까지」	납부액의 80% 환불	개원일 전 마지막 평일 - (18시)까지 적용 ※2학기 개원일 8. 24.(일) 11:00
		입사등록기간 이후 2주까지 「8. 11.(월) 16:00 ~ 8. 18.(월) 16:00까지」	납부액의 70% 환불	
		입사등록기간 이후 3주까지 「8. 18.(월) 16:00 ~ 입사일 전까지」	납부액의 60% 환불	
		3주 이후부터 입사일 전까지	납부액의 50% 환불	
학기 중 퇴사	재사생	-	당월 분을 제외한 잔여 월의 70% 환불	2.3월, 8.9월은 1개월로 적용
학기 중 강제 퇴사	재사생		환불 없음	사생수칙 위반 (제18조 퇴사처분)